

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5조(계약기간) 원활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둔다.

- ① 본 센터와 대상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서비스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16조(계약목적)

-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- ②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7조(이용계약의 방법)

-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“대상자의 가족(보호자)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”(이하 ‘보호자’라 함)과 계약이 가능하다.
-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 1. 기관은 대상자의 **장기요양인정서**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」별지 제6호서식)와 **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**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」별지 제7호서식)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.
 2.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“**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**(이하 ‘계약서’라 함)”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(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동일한 과정을 따르거나 별도의 동의서로 갈음한다).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“**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**” 등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인쇄물을 제공한다.
 3.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·관리한다.
- ③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.
- ④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,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(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.)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8조(월 이용료)

-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- ② 주·야간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(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대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)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- 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[붙임2]와 같다. 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.)

제19조(그 밖의 비용 부담액)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
- ① 식재료비
- ② 이·미용비
-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
-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.
- 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⑦ 시설은 매년도 수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내지 비용부담액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‘보호자’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-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2.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3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4.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5.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6.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7.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 8.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9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-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
 1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 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
 3.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 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 5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 6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 7.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

제21조(계약의 해제)

- ① 계약의 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-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.
 1.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 2.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 3.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 4.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
1.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종결을 원하거나,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2.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(연 2회).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3.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 (2025년 기준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○ 기관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

1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
 - 대상자 가)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: 2009.1.1.부터 감경 시행
 나)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: 2009.4.1.부터 감경 시행
 - 감경률 :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

2)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

- 저소득 대상자 : 2009.7.1.부터 감경 시행

- 감경대상 및 감경률

※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 “보험료액”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가 0~25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

▼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

▼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,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

3)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

구분	장기요양급여비용		의사소견서 발급비용
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	재가급여	본인 6% 공단 94%	본인 10%
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	재가급여	본인 9% 공단 91%	공단 90%